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2호 중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차동차충전사업자”를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기사용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약관이나 법 제16조의5에 따른 계약 또는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2. 법 제16조의5에 따른 계약 또는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에서 정하는 공급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8조 중 “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가 1천킬로와트초과의 발전설비(둘 이상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발전설비용량은 합산한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제2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전설비의 용량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4조의2제1항 관련”을 “제4조의3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소규모전력중개사업란 다음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 또는 에너지·기상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

제1조의3제1항 중 “1천킬로와트”를 “2만킬로와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천킬로와트”를 “2만킬로와트”로 한다.

별표 1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인력란 중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 또는 환경”을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 또는 에너지·기상”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u>1천킬로와트</u> 이하를 말한다.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 ----- ----- ----- ----- ----- <u>2만킬로와트</u> -----
②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충전·방전설비용량 <u>1천킬로와트</u> 이하를 말한다.	② ----- ----- ----- <u>2만킬로와트</u> -----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 ----- -----

우를 말한다.

1. (생략)

<신설>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3 ~ 4. (생략)

<신설>

제8조(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법

-----.

1. (현행과 같음)

1의2. 전기사용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약관이나 법 제16조의5에 따른 계약 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의2. 법 제16조의5에 따른 계약 또는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에서 정하는 공급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8조(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란 <u>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한다.</u>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란 <u>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한다.</u>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u><신 설></u>	제19조(전력거래) ----- -----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u>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가 1천킬로와트 초과</u> 의 발전설비(둘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한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u>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u>

제20조(전력의 직접 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단 서 신 설>

[별표 1]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2 제1항관련)

구분	등록기준		
	인력	시설	자본금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생략)	(생략)	(생략)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 또는 <u>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u> 둘 것. 이 경우	(생략)	(생략)

제20조(전력의 직접 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다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전설비의 용량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1]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3 제1항관련)

구분	등록기준		
	인력	시설	자본금
전기자동차충전사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 <u>환경 또는 에너지·기상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u> 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것. 이 경우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재 생 에 너 지 전 기 공 급 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 또는 에너지·기상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둔 것.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